

천안시 행복주택 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06. 05]

1. 건설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88 (천안백석LH1단지 562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4로 9 (천안불당LH1단지 740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1로 80 (천안신방LH1단지 450호)

「아산배방4, 아산배방12, 아산탕정5, 천안백석1, 천안불당1, 천안신방1」
(아산탕정1-A1BL)

공고일 및 공급일정이 같은 주택 중 1개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함)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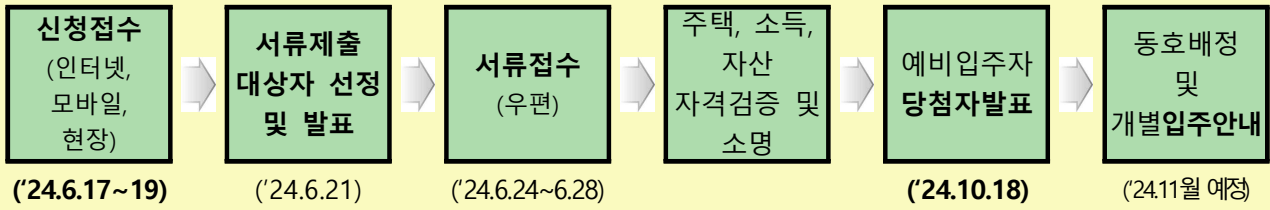
내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방문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천안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6.05.(수)**이며,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기입주단지의 공개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천안백석1(2017년 12월), 천안불당1(2019년 06월), 천안신방1(2018년 11월)는 각각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자격완화 모집

- 본 공고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 및 별표17에 의거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는 [자격완화순위 ▶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 추첨] 순에 따라 선정되며 자격완화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2 ②에 따라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재계약 만료 시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갱신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요약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우편접수)	예비입주자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
일정	<input type="checkbox"/> 인터넷/모바일 신청 '24.6.17(월) 10:00 ~ '24.6.19(수) 16: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24.6.21(금) 17:00 이후	'24.6.24(월) ~6.28(금)	'24.10.18(금) 17:00이후	'24.11월이후 순차적 개별 입주안내 예정
	<input type="checkbox"/> 현장접수 *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함. * 신청서류 및 신청서 양식 반드시 구비 '24.6.17(월) 10:00 ~ 16:00 (점심시간 11:40~13:00 제외)				
장소	- PC : LH청약플러스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App - 현장 : LH천안권주거복지지사	LH청약플러스 ARS (1661-7700)	우편접수만 운영	LH청약플러스	동호배정 후 개별계약안내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코아루웰메이드시티 2층) (점심시간 12:00~13:00, 오전업무접수 11:40 마감)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해 신청접수기간 내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 우편발송주소 : (우)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소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천안아산역 코아루웰메이드시티 2층)	1670-0003 1600-1004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① 천안백석 H1BL 행복주택 (천안백석LH1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최대 거주 기간 (년)	건설 호수	모집인원 (265)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구조 및 난방
				현재 공가 호수	금회 모집 인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 차 장		
16A (빌트인)	대학생	6	240	65	120	16.80	10.2609	1.6176	7.1643	35.8428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개별 난방
	청년	6									
26A	청년	6	96	19	40	26.87	15.6368	2.5874	11.4587	56.5529	
	고령자	20									
	주거급여 수급자	2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10									
26B (주거 약자용)	고령자	20	22	7	15	26.94	15.5693	2.5941	11.4885	56.5919	
36A	청년	6	139	28	60	36.95	20.7474	3.5580	15.7573	77.0127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10									
	고령자	20									
	주거급여 수급자	2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10	58	17	30	44.90	24.9389	4.3236	19.1475	93.3100	

- 16A, 26A, 36A형은 각 공급대상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16A형 주택에는 책상, 가스쿠팡(2구), 미니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 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재 공가 호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기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주, 세대 내 하자보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천안백석 H1BL 행복주택 (천안백석LH1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계 (100%)	계약금 (5%)	잔금 (95%)					
16A (빌트인)	대학생	↑	6,000,000	23,816,000	62,980	↓	14,000,000	138,810	
		↓	14,000,000	3,816,000	138,810	↑	7,000,000	62,910	
	청년	소득O	18,864,000	943,000	17,921,000	103,750	↓	15,000,000	147,500
		소득X	17,816,000	890,000	16,926,000	97,980	↑	6,000,000	62,980
26A	청년	소득O	27,540,000	1,377,000	26,163,000	151,470	↓	22,000,000	215,630
		소득X	26,010,000	1,300,000	24,710,000	143,050	↑	14,000,000	61,380
	고령자	↑	16,000,000	45,070,000	66,540	↓	23,000,000	226,960	
		↓	23,000,000	6,070,000	226,960	↑	11,000,000	62,050	
	주거급여 수급자	↑	11,000,000	33,950,000	62,050	↓	18,000,000	178,720	
		↓	18,000,000	4,950,000	178,720	↑	17,000,000	69,13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7,000,000	47,600,000	69,130	↓	24,000,000	238,300	
		↓	24,000,000	6,600,000	238,300	↑	16,000,000	66,540	
26B (주거 약자용)	고령자	↑	16,000,000	45,070,000	66,540	↓	23,000,000	226,960	
		↓	23,000,000	6,070,000	226,960	↑	20,000,000	83,110	
36A	청년	소득O	36,324,000	1,816,000	34,508,000	199,780	↓	29,000,000	284,360
		소득X	34,306,000	1,715,000	32,591,000	188,680	↑	19,000,000	77,84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2,000,000	62,360,000	93,640	↓	32,000,000	315,310	
		↓	32,000,000	8,360,000	315,310	↑	21,000,000	88,380	
	고령자	↑	21,000,000	59,342,000	88,380	↓	31,000,000	301,290	
		↓	31,000,000	7,342,000	301,290	↑	17,000,000	67,310	
	주거급여 수급자	↑	17,000,000	47,270,000	67,310	↓	24,000,000	236,480	
		↓	24,000,000	6,270,000	236,480	↑	27,000,000	110,68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7,000,000	75,760,000	110,680	↓	39,000,000	381,930	
		↓	39,000,000	9,760,000	381,930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아산탕정 1-A1BL 행복주택 (천안불당LH1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최대 거주 기간 (년)	건설 호수	모집인원 (235)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구조 및 난방
				현재 공가 호수	금회 모집 인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 장		
16A (빌트인)	대학생	6	278	59	100	16.52	10.2526	1.2030	6.0383	34.0139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 난방
	청년	6									
26A (빌트인)	청년	6	166	26	50	26.48	16.4341	1.9284	9.6788	54.5213	
	주거급여 수급자	20									
	고령자	2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10									
26B (주거 약자용)	고령자	20	20	13	20	26.48	16.4341	1.9284	9.6788	54.5213	
36A	청년	6	252	24	50	36.71	22.7831	2.6734	13.4181	75.5846	
	주거급여 수급자	20									
	고령자	2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10									
36B (주거 약자용)	고령자	20	24	6	15	36.53	22.6714	2.6603	13.3523	75.2140	

- 16A, 26A, 36A형은 각 공급대상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16A, 26A형 주택에는 책상, 가스쿡탑(2구), 미니냉장고 등이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 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재 공가 호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기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주, 세대 내 하자보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아산탕정 1-A1BL 행복주택 (천안불당NH1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계 (100%)	계약금 (5%)	잔금 (95%)				
16A (빌트인)	대학생		18,972,000	948,000	18,024,000	104,340	↑ 7,000,000	25,972,000	63,500
							↓ 15,000,000	3,972,000	148,090
	청년	소득O	20,088,000	1,004,000	19,084,000	110,480	↑ 8,000,000	28,088,000	63,810
		소득X	18,972,000	948,000	18,024,000	104,340	↓ 16,000,000	4,088,000	157,140
26A (빌트인)	청년	소득O	31,860,000	1,593,000	30,267,000	175,230	↑ 18,000,000	49,860,000	70,230
		소득X	30,090,000	1,504,000	28,586,000	165,490	↓ 25,000,000	6,860,000	248,140
	주거급여 수급자		26,550,000	1,327,000	25,223,000	146,020	↑ 17,000,000	47,090,000	66,320
							↓ 24,000,000	6,090,000	235,490
	고령자		33,630,000	1,681,000	31,949,000	184,960	↑ 14,000,000	40,550,000	64,350
							↓ 21,000,000	5,550,000	207,27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5,400,000	1,770,000	33,630,000	194,700	↑ 19,000,000	52,630,000	74,120	
						↓ 27,000,000	6,630,000	263,710	
26B (주거 약자용)	고령자		32,680,000	1,634,000	31,046,000	179,740	↑ 20,000,000	55,400,000	78,030
							↓ 28,000,000	7,400,000	276,360
36A	청년	소득O	42,696,000	2,134,000	40,562,000	234,820	↑ 18,000,000	50,680,000	74,740
		소득X	40,324,000	2,016,000	38,308,000	221,780	↓ 26,000,000	6,680,000	255,570
	주거급여 수급자		35,580,000	1,779,000	33,801,000	195,690	↑ 24,000,000	66,696,000	94,820
							↓ 34,000,000	8,696,000	333,980
	고령자		45,068,000	2,253,000	42,815,000	247,870	↑ 22,000,000	62,324,000	93,440
							↓ 32,000,000	8,324,000	315,1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7,440,000	2,372,000	45,068,000	260,920	↑ 20,000,000	55,580,000	79,020	
						↓ 28,000,000	7,580,000	277,350	
36B (주거 약자용)	고령자		45,068,000	2,253,000	42,815,000	247,870	↑ 25,000,000	70,068,000	102,030
							↓ 36,000,000	9,068,000	352,87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천안신방(A-1) 행복주택 (천안신방LH1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최대 거주 기간 (년)	건설 호수	공급호수 (155)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구조 및 난방
				현재 공가 호수	금회 모집 인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 차 장		
16A (빌트인)	대학생	6	174	43	80	16.81	8.0644	2.1440	9.8400	36.8584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개별 난방
	청년	6									
26A	청년	20	68	5	10	26.42	12.6747	3.3697	15.4654	57.9298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10									
	고령자	20									
	주거급여 수급자	20									
26A1 (빌트인)	청년	6	22	2	10	26.42	12.6747	3.3697	15.4654	57.9298	
26B (주거 약자용)	고령자	20	24	8	15	26.60	12.7610	3.3926	15.5708	58.3244	
36A	청년	6	162	20	40	36.25	17.3905	4.6235	21.2196	79.4836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10									
	고령자	20									
	주거급여 수급자	20									

- 16A, 26A, 36A형은 각 공급대상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16A형 및 26A1형 주택에는 책상, 가스쿡탑(2구), 미니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m²이상 주택 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만을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재 공가 호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기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주, 세대 내 하자보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천안신방(A-1) 행복주택 (천안신방LH1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계 (100%)	계약금 (5%)	잔금 (95%)					
16A (빌트인)	대학생	14,008,000	700,000	13,308,000	77,040	↑ 2,000,000 ↓ 11,000,000	16,008,000 3,008,000	65,370 109,120	
	청년	소득O	14,832,000	741,000	14,091,000	81,570	↑ 3,000,000 ↓ 12,000,000	17,832,000 2,832,000	64,070 116,570
		소득X	14,008,000	700,000	13,308,000	77,040	↑ 2,000,000 ↓ 11,000,000	16,008,000 3,008,000	65,370 109,120
	26A	청년	소득O	22,212,000	1,110,000	21,102,000	122,160	↑ 10,000,000 ↓ 18,000,000	32,212,000 4,212,000
소득X			20,978,000	1,048,000	19,930,000	115,370	↑ 9,000,000 ↓ 17,000,000	29,978,000 3,978,000	62,870 164,9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4,680,000	1,234,000	23,446,000	135,740	↑ 12,000,000 ↓ 20,000,000	36,680,000 4,680,000	65,740 194,070	
고령자		23,446,000	1,172,000	22,274,000	128,950	↑ 11,000,000 ↓ 19,000,000	34,446,000 4,446,000	64,780 184,360	
주거급여 수급자		18,510,000	925,000	17,585,000	101,800	↑ 7,000,000 ↓ 15,000,000	25,510,000 3,510,000	60,960 145,550	
26A1 (빌트인)	청년	소득O	22,860,000	1,143,000	21,717,000	125,730	↑ 11,000,000 ↓ 18,000,000	33,860,000 4,860,000	61,560 178,230
		소득X	21,590,000	1,079,000	20,511,000	118,740	↑ 10,000,000 ↓ 17,000,000	31,590,000 4,590,000	60,400 168,320
26B (주거 약자용)	고령자	23,446,000	1,172,000	22,274,000	128,950	↑ 11,000,000 ↓ 19,000,000	34,446,000 4,446,000	64,780 184,360	
36A	청년	소득O	30,456,000	1,522,000	28,934,000	167,500	↑ 17,000,000 ↓ 24,000,000	47,456,000 6,456,000	68,330 237,500
		소득X	28,764,000	1,438,000	27,326,000	158,200	↑ 16,000,000 ↓ 23,000,000	44,764,000 5,764,000	64,860 225,28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3,840,000	1,692,000	32,148,000	186,120	↑ 19,000,000 ↓ 27,000,000	52,840,000 6,840,000	75,280 264,870	
	고령자	32,148,000	1,607,000	30,541,000	176,810	↑ 18,000,000 ↓ 26,000,000	50,148,000 6,148,000	71,810 252,640	
	주거급여 수급자	↑ 13,000,000 ↓ 20,000,000	38,380,000 5,380,000	63,750 197,92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순서

자격완화순위 ▶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 추첨

비고



※ ① → ⑨의 순서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는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지 않고 추첨만으로 선정합니다.

★ **자격완화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은 (1)기간요건 및 (2)소득요건의 순위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순위로 인정**됩니다. (대학생, 청년(사회초년생 제외), 예비신혼부부, 고령자는 소득요건만 해당)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2 ②에 따라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재계약 만료 시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갱신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요건**

공급계층	입주자격	1순위	2~3순위
사회초년생	소득 업무 종사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혹은 자녀나이(태아포함)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	10년 이내 혹은 만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나이	만 6세 이하	만 9세 이하

(2) **소득요건(세전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공급계층	가구 원수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	금액(원)	기준	금액(원)	기준	금액(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맞벌이X) 한부모가족 고령자	1인	120%	4,179,557	140%	4,876,150	150%	5,224,446
	2인	110%	5,957,283	130%	7,040,426	150%	8,123,568
	3인	100%	7,198,649	120%	8,638,379	150%	10,797,974
	4인	100%	8,248,467	120%	9,898,160	150%	12,372,701
	5인	100%	8,775,071	120%	10,530,085	150%	13,162,607
	6인	100%	9,563,282	120%	11,475,938	150%	14,344,923
신혼부부(맞벌이)	2인	130%	7,040,426	140%	7,581,997	150%	8,123,568
	3인	120%	8,638,379	130%	9,358,244	150%	10,797,974
	4인	120%	9,898,160	130%	10,723,007	150%	12,372,701
	5인	120%	10,530,085	130%	11,407,592	150%	13,162,607
	6인	120%	11,475,938	130%	12,432,267	150%	14,344,923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1순위), 945,853원(2순위), 1,182,317원(3순위)을 합산하여 산정 (※ 맞벌이 신혼부부 : 945,853원(1순위), 1,024,674원(2순위), 1,182,317원(3순위) 합산)

★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반공급순위의 지역기준 및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
지역 1순위	충남 천안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남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주시, 진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인 자
지역 2순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단, 1순위 해당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인 자
지역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1. 대학생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㉞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㉞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㉞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㉞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이하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 2인인 경우 110% 이하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179,557 원 이하 120%	4,876,150 원 이하 140%	5,224,446 원 이하 150%
2인	5,957,283 원 이하 110%	7,040,426 원 이하 130%	8,123,568 원 이하 150%
3인	7,198,649 원 이하 100%	8,638,379 원 이하 120%	10,797,974 원 이하 150%
4인	8,248,467 원 이하 100%	9,898,160 원 이하 120%	12,372,701 원 이하 150%
5인	8,775,071 원 이하 100%	10,530,085 원 이하 120%	13,162,607 원 이하 150%
6인	9,563,282 원 이하 100%	11,475,938 원 이하 120%	14,344,923 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2순위 945,853원 3순위 1,182,31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 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자격완화순위(소득) →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순위**

① **입주자자격완화순위**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 140%, 2인 130%)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②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1순위	충남 천안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남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주시, 진천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인 자
2순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단, 1순위 해당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3-2. 청년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㉔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㉔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㉔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6.06.~2005.06.05)
- ①-㉔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이하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2인인 경우 110% 이하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179,557 원 이하	120%	4,876,150 원 이하	140%	5,224,446 원 이하	150%
	2인	5,957,283 원 이하	110%	7,040,426 원 이하	130%	8,123,568 원 이하	
	3인	7,198,649 원 이하	100%	8,638,379 원 이하	120%	10,797,974 원 이하	
	4인	8,248,467 원 이하	100%	9,898,160 원 이하	120%	12,372,701 원 이하	
	5인	8,775,071 원 이하	100%	10,530,085 원 이하	120%	13,162,607 원 이하	
	6인	9,563,282 원 이하	100%	11,475,938 원 이하	120%	14,344,923 원 이하	
세대원(본인)	1인	4,179,557 원 이하	120%	4,876,150 원 이하	140%	5,224,446 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2순위 945,853원, 3순위 1,182,31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㉔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유의사항 ★

- ① 현재 직장에서만 근무한 기간이 아닌, **이전부터 소득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 ② 프리랜서, 자영업 등 위 서류를 통해 소득업무 종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사 기간 증빙에 대한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③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임대조건·최대거주기간 등이 모두 동일하니 가급적 '사회초년생'이 아닌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자격완화순위(기간·소득) →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순위

① 입주자자격완화순위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 140%, 2인 130%)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②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1순위	충남 천안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남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주시, 진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단, 1순위 해당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㉒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①-㉓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중인 사람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 혹은 만 9세이하 자녀)
-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㉒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완화조건】 120%(2순위), 150%(3순위)),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일 것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5,957,283 원 이하	110%	7,040,426 원 이하	130%	8,123,568 원 이하	150%
	3인	7,198,649 원 이하	100%	8,638,379 원 이하	120%	10,797,974 원 이하	
	4인	8,248,467 원 이하	100%	9,898,160 원 이하	120%	12,372,701 원 이하	
	5인	8,775,071 원 이하	100%	10,530,085 원 이하	120%	13,162,607 원 이하	
	6인	9,563,282 원 이하	100%	11,475,938 원 이하	120%	14,344,923 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040,426 원 이하	130%	7,581,997 원 이하	140%	8,123,568 원 이하	150%
	3인	8,638,379 원 이하	120%	9,358,244 원 이하	130%	10,797,974 원 이하	
	4인	9,898,160 원 이하	120%	10,723,007 원 이하	130%	12,372,701 원 이하	
	5인	10,530,085 원 이하	120%	11,407,592 원 이하	130%	13,162,607 원 이하	
	6인	11,475,938 원 이하	120%	12,432,267 원 이하	130%	14,344,923 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2순위 945,853원, 3순위 1,182,317원), 맞벌이 945,853원(2순위 1,024,674원, 3순위 1,182,31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자격완화순위(기간·소득) →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 추첨

- ※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순위

① 입주자자격완화순위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인 110%, 맞벌이2인 130%, 맞벌이3인↑ 120%)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등 (※소득금액표 참고)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② 일반공급 순위(지역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충남 천안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남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주시, 진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단, 1순위 해당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4.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출생일 : 1959. 6. 5. 포함 이전 출생)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2순위), 150%(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이하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2인인 경우 **110%** 이하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179,557 원 이하	120%	4,876,150 원 이하	140%	5,224,446 원 이하	150%
2인	5,957,283 원 이하	110%	7,040,426 원 이하	130%	8,123,568 원 이하	
3인	7,198,649 원 이하	100%	8,638,379 원 이하	120%	10,797,974 원 이하	
4인	8,248,467 원 이하	100%	9,898,160 원 이하	120%	12,372,701 원 이하	
5인	8,775,071 원 이하	100%	10,530,085 원 이하	120%	13,162,607 원 이하	
6인	9,563,282 원 이하	100%	11,475,938 원 이하	120%	14,344,923 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2순위 945,853원, 3순위 1,182,31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자격완화순위(소득)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우편접수)	예비입주자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
일정	<input type="checkbox"/> 인터넷/모바일 신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24.6.17(월) 10:00 ~ '24.6.19(수) 16: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div>	'24.6.21(금) 17:00 이후	'24.6.24(월) ~ 6.28(금)	'24.10.18(금) 17:00이후	'24.11월이후 순차적 개별 입주안내 예정
	<input type="checkbox"/> 현장접수 *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함. * 신청서류 및 신청서 양식 반드시 구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24.6.17(월) 10:00 ~ 16:00 (점심시간 11:40~13:00 제외) </div>				
장소	- PC : LH청약플러스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App - 현장 : LH천안권주거복지지사	LH청약플러스 ARS (1661-7700)	우편접수만 운영	LH청약플러스	동호배정 후 개별계약안내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코아루웰메이드시티 2층) (점심시간 12:00~13:00, 오전업무접수 11:40 마감)					

- * 본공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방문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동일 순위의 경우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일부 낙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후 신청서류 미비, 작성누락 등이 발생하면 서류미제출 부적격 처리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 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우편으로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우편발송주소** : (우)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LH 천안권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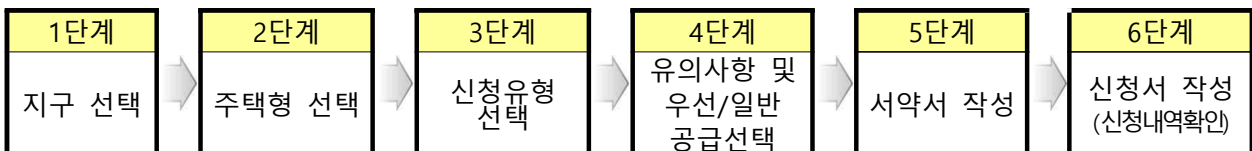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4.06.24.(월)~06.28(금)]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4.06.2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주소 : (우)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현장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 광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4.06.17(월) 10시부터 24.06.19(수) 16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6.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 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	·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첨부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층		재학증명서 제출 - (모든 학기를 수료하였으나 졸업하지 않은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각 ' ★자격완화순위 ' (1)기간요건의 기한 이상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신 혼 부 부 계 층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필수)	행정복지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당첨/낙첨자 조회)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4.11월이후 개별 입주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천안권주거복지지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 지방세정 자료

		<p>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p>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p> <p>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p>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원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계층변경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08 477 1453 633">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2 ②에 따라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재계약 만료 시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소득기준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말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천안백석1

이 주택은 2017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남측, 서측 및 북측에 20M 인접도로가, 동측에 30M인접도로가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서측에 전문상가 단지가 있으며 북측으로 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공동주택 및 상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 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민 편의시설 측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 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전·후·측면에 재활용품 용기보관소(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및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됩니다.
- 103동 주변 지하에 전기·발전기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402대(지하주차장 253대, 지상주차장 145대, 근린생활시설 4대)로 되어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를 102동 지하, 헬룸 3실에 설치하고, 안테나를 어린이집 앞, 기계실 환기실, 103동 뒤에 설치합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는 2차로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3m입니다.

천안불당1

이 주택은 2019년 06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는 국민임대 408호, 행복주택 740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 북측(한들문화센터 연결)으로 20.0m 도로가 개설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 추진 과정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북측(H:9.0m, L:304m)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남측은 공동주택, 서측은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근린공원에 산책로로 인해 일부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대지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 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 지분 정리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등), 동·호수 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녹지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 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저층 세대는 보안등 불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 일부타입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1동 8호세대 측벽에서 약3M 거리에 전기실 환기설비 등을 위한 D/A가 설치되어, 다소의 소음 및 송풍에 의한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2호세대 발코니 외부창호에서 약8M 거리에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등을 위한 D/A가 설치되어, 다소의 소음 및 송풍에 의한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쓰레기수거함 8개소, 자전거 보관대(39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849대(지하주차장 425대, 지상주차장 424대, 근린생활시설 3대 포함)로 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국민임대주택과 공동사용)**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는 지하주차장용, 아파트용으로 분리되어 있어 아파트 세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홍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관련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임대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범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외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외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팜플렛 상의 면적을 표현한 치수는 설계상의 위치 및 숫자로서 안목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발전기실, 열교환실 인접 등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단지경계 녹지(101동 서남측)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됩니다
- 101동 측면, 서측 산책로에 근접하여 발전기실 송풍 및 배연등을 위한 D/A가 설치되며, 다소의 소음 및 배연에 의한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105동 옥상층에 설치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는 2차로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1m입니다.

천안신방1

이 주택은 2018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는 행복주택(450세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북측 21.0M도로 및 동측25M 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남측은 공동주택, 서측은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근린공원에 산책로로 인해 일부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대지측량결과, 관련법규의변경, 인·허가의변경, 사업승인변경및신고, 대지지분정리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수경,시설물,포장등), 동·호수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민 편의시설 측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쓰레기수거함 3개소, 자전거 보관대(76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315대(지하주차장 233대, 지상주차장 82대)로 되어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101동 엘리베이터 홀 전실은 각 층마다 창문중 1개소, 계단실은 5개층마다 개폐창 1개소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의 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홍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팸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관련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임대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범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단지 내 화단에 설치합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는 2차로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1m입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p>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천안불당1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생활환경 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및지역중심과단지중심간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법안전		방법안전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화재 · 소방 등급	화재 · 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천안백석 H1BL (천안백석1)	한국토지 주택공사	건축,기술,토목	(주)태한종합건설 (100%) 대창설비(주)(소방)	-	(주)A+CM건축사사무소 한국건설관리공사
		전기	성일전력(주), 혜전건설(주)(소방)		
		통신	에스앤지텔레콤(주)		
		조경	대웅건설(주)		
		가스	(주)동화에너지		
아산탕정 1-A1 (천안불당1)	한국토지 주택공사	건축 토목 소방	남양건설(주) 제일건설(주)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주)한동엔지니어링 (소방감리) *감리금액 : 286,000천원
		기계	(주)소림기계설비		
		전기	(주)성일		
		통신	(주)대건시스템즈		
		조경	청인건설(주)		
		가스	(주)용명이엔지		
천안신방 (A-1) (천안신방1)	한국토지 주택공사	건축,기계,토목	(주)세운건설 극동건설(주)	-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무영 씨엠건축사사무소 (주)한국방재리더스
		전기	(주)풍산건설(전기) (주)코비(소방)		
		통신	테크노빌리지(주)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단이→밖여단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계약장소 비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사본) 세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권주거복지지사

<p>임대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70-0003,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p>당첨자 ARS</p>	<p>1661-7700</p>
<p>접수처 약도</p>	
<p>도로명 주소</p>	<p>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p>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6.05.



한국토지주택공사 천안권주거복지지사